



물품(구매) 수의견적 공고

시민행복시대를
열겠습니다

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

- 건 명: 2026년 논산시 하반기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의약품·소모품 구입
- 기초금액 : 금53,997,740원(금오천삼백구십구만칠천칠백사십원) ※부가가치세 포함
- 납품기한: 계약일로부터 21일
- 납품장소: 논산시보건소
- 구매내역: 당화혈색소시약 등 77종(구입목록 참조)
※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전에 **물품규격서, 구매내역서, 계약조건**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, 구매 대상 물품 전부를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
2 견적제출 및 개찰

- 견적서 제출기간: 2026. 8. 28.(금) 14:00 ~ 2026. 9. 3.(목) 14:00
- 개찰일시 및 장소: 2026. 9. 4.(금) 15:00 논산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
-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,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(www.g2b.go.kr)를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-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(입찰 등록 및 투찰)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(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
3

참가자격 및 제출서류

※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**우리 시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**로, 전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전적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)가 **충청남도 논산시**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.

- 「약사법」 제45조에 따른 **의약품판매업(의약품도매상)[업종코드: 5307]**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별표 6에 따른 **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(KGSP)**에 적합한 업체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·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**위·수탁계약서 사본 및 수탁업체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 업체**

※ 제출된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및 위·수탁계약서의 유효기간은 납품완료일까지 유효하여야 함.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**소기업자**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**소상공인**으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**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**한 업체

※ 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는 전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smpp.go.kr)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.

4

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

- 입찰보증금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**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전적서 제출로** 같음합니다.

5

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

-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$\pm 3\%$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적제출자가

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.
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」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%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,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-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을 선정합니다.
-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**10일 이내**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.

6 견적제출의 무효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.
-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. 입찰대리인은 견적 제출 당시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, 개찰 결과 선순위 업체는 참가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7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사항

- 본 공고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**‘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’**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일정 기간 논산시와의 수의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8

청렴계약이행준수

-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논산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,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.
-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(날인)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9

기타사항

-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**공급가액의 1.5%**에 해당하는 **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**를 매입하여야 합니다.
- 품질, 생산중단 등으로 규격제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제품을 대체 납품할 수 없습니다.
-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, 공고문, 물품규격서, 구매내역서, 계약조건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견적제출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-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, 연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(www.g2b.go.kr) 게재에 의합니다.
-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.
 -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: 논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(☎041-746-8014)
 - 사업내용: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공동체건강팀(☎041-746-8113)
 - 전자입찰 이용안내: 나라장터 콜센터(☎1588-0800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8.

충청남도 논산시 재무관

수의계약 배제사유

-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,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
-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, 담합행위, 입찰·계약 서류의 허위·위조 제출, 입찰·낙찰·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
 - ※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「낙찰자결정기준」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“4”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,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>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이때 ‘입찰공고일’은 ‘안내공고일’로 ‘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’은 ‘견적서 제출마감일’로 본다.
-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·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,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불법하도급,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
 - ※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.
-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 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(법인은 대표자)
 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(배우자 포함)의 직계 존·비속인 사업자
 3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한 자
 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(배우자, 직계존·비속)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
 5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
-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
-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
- ⑩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(용역)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(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) 이상인 자. 다만,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(단, 제3절의 “1”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)